

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

제정 2007. 8. 13 조례 제1544호
일부개정 2011. 4. 15 조례 제1767호(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 2014. 8. 22 조례 제2009호(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14. 10. 17 조례 제2031호(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 2016. 9. 26 조례 제2195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88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1. 6. 10 조례 제2768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5. 7. 4 조례 제3278호
일부개정 2025. 12. 19 조례 제335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1. 6. 10]

제2조(관리대상) ①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도시숲 · 생활숲 · 가로수(이하 “도시숲등”이라 한다)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4. 15, 2018. 7. 31, 2021. 6. 10>

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2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21. 6. 10>

제3조(시장의 책무)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도시숲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 ·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6. 10>

[전문개정 2018. 7. 31]

[제목개정 2021. 6. 10]

제4조(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을 대상으로 도시숲등 조성 · 관리계획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5, 2018. 7. 31, 2021. 6. 10>

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 · 관

리 계획(이하 “연차별 가로수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, 2021. 6. 10, 2025. 7. 4>

1.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의2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

2.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 ·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 · 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5조에 따른 광명시 도시숲등의 조성 ·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25. 7. 4>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도시숲등의 조성 · 관리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8. 7. 31, 2021. 6. 10, 2025. 7. 4>

1.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심의 사항

2.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(단, 대상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가로수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.)

3.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 · 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

4. 도시숲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 · 설계에 대한 사항

5.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

6.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
② 삭제 <2021. 6. 10>

[제목개정 2018. 7. 31]

제5조의2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5. 7. 4>

② 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,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5. 7. 4>

③ 삭제 <2025. 7. 4>

[본조신설 2021. 6. 10]

제5조의3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1. 6. 10]

제5조의4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본조신설 2021. 6. 10]

제5조의5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[본조신설 2021. 6. 10]

제5조의6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

[본조신설 2021. 6. 10]

제6조(수종의 선정) ①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. <개정 2018. 7. 31, 2021. 6. 10>

1. 은행나무
2. 느티나무
3. 이팝나무
4. 왕벚나무
5. 메타세콰이아
6. 소나무
7.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

② 주요 도로별 식재 수종은 별표 4와 같다.

제7조(조성협의 등)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26, 2018. 7. 31, 2021. 6. 10>

1. 도로의 신설, 변경,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
 2. 도로의 신설, 변경,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
 3.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
 4.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·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
 5.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
 6.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
-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, 2021. 6. 10>
1. 도로의 신설·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
 2.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
 3.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·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, 안전시설물의 종류·규격에 대한 적정성, 통신·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
 4.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
 5. 그 밖에 관련법령 및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에 따른 사항

제8조(식재기준) ① 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,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,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향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라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다층식, 병렬식, 다층식,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-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5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.
-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.

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6에 따라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제9조(관리시설물)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7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 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7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.

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, 제7조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7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제10조(병·해충 방제) 시장은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8에 따라 가로수 병·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.

제11조(가로수 조성·관리사업 승인 등)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(이하 “원인자”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시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5, 2018. 7. 31, 2021. 6. 10>

1.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
2. 가로수를 옮겨 심기
3. 가로수의 제거
4.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

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 관련 법령, 조례,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,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,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

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. <개정 2014. 10. 17, 2018. 7. 31>

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.

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9와 같다.

[제목개정 2021. 6. 10]

제12조(부담금의 강제징수)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7. 4, 2025. 12. 19>

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기간”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 <신설 2025. 7. 4, 개정 2025. 12. 19>

[전문개정 2018. 7. 31]

제13조(신고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 한 사람(이하 “신고인”이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가로수를 손괴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 <개정 2018. 7. 31>

1. 가로수 조성·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
2.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
3.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
4.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

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

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.
<개정 2018. 7. 31>

1. 신고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2. 전화신고(일시, 장소, 내용, 차량번호 등)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,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1.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
2.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
3.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
4.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
5. 계획에 따른 복구 등

제14조(점검 등) ① 시장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, 11월 등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별표 8에 따라 병·해충 발생시기 전·후에 수종별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제15조 삭제 <2018. 7. 31>

제16조(자료유지)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, 2021. 6. 10>

제17조 삭제 <2021. 6. 10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4. 15 조례 제1767호,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8. 22 조례 제2009호,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

부칙 <2014. 10. 17 조례 제2031호,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9. 26 조례 제2195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8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6. 10 조례 제276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5. 7. 4 조례 제3278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25. 12. 19 조례 제335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조례로 정하는 도로관리 대상

도로의 종류	가로수관리청	비 고
안양천 제방위 도로 (삼각주마을 ~ 금천교 간)	광명시장	4m이상

[별표 2]

집중관리대상 가로수

집중관리대상 가로수	도로명	가로수 관리청	비 고
광명역 주변 가로수	서독로 (가학삼거리 ~ 고속철도역사)	시장	
광명역 주변 가로수	일직로 (오리로덕안삼거리 ~ 안양시계)	시장	
느티나무	모세로 (철산7단지 ~ 철산로)	시장	

[별표 3] 삭제 <2018. 7. 31>

[별표 4]

주요 도로별 식재수종

집중관리대상 가로수	주요 도로명	식재수종	비고
광명역 주변 이팝나무 숲길	서독로 (가학삼거리~고속철도역사)	이팝나무 소나무	
명품 느티나무의 숲길	모세로 (철산7단지~철산로)	느티나무	
경륜장 주변 숲길	경륜로 (광남교~식곡로)	벚나무	
서편 녹지축	광명로 (개봉교~시흥시계(박달동))	은행나무 느티나무	
동편 녹지축	오리로 (경찰서~안양시계(박달동))	은행나무 느티나무	

[별표 5]

도로별 식재조성 기준

구분	조성 기준	비고
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	병렬다층식	
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~10미터 미만	병렬식	
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~7미터 미만	다층식	
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	단열단층식	

[별표 6]

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

구 분	식재 규격	비 고
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	흉고직경 12cm 이상, 근원경 16cm 이상	
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~10미터 미만	흉고직경 10cm 이상, 근원경 14cm 이상	
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~7미터 미만	흉고직경 8cm 이상, 근원경 12cm 이상	
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	흉고직경 6cm 이상, 근원경 8cm 이상	

[별표 7]

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

구 분	시설물 규격 및 종류	비 고
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	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,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	
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~10미터 미만	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,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	현지상황에 맞게 시장과 협의 변경 가능
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~7미터 미만	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,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	
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	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,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	

[별표 8]

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

수명	가해수종	가해구분	방제법	방제시기
미국흰불나방	벚나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	잎	○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○ 디프제 살포	○ 1화기 : 6월 상순 ○ 2화기 : 8월 초·중순
황철나무 알락하늘소	현사시 포플러류	가지	○ 피해가지 절단 소각 ○ 싸이프린액제, 파프유제 살포	○ 5월 하순~6월 중순
재주나방	포플러류 버드나무	잎	○ 피해가지 절단 소각 ○ 만코지 수화제 살포	○ 1화기 : 5월 초·중순 ○ 2화기 : 9월초~중순
텐트나방	포플러류 버드나무 벚나무 느티나무	잎	○ 알덩어리 채취 소각 ○ 디프제 살포	○ 4월 중·하순
버즘나무 방패벌레	버즘나무	잎	○ 할로스린 1%유제, 에토펜프 록스 10% 수화제 수관살포 ○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	○ 수관살포 : 5월 하순 ~6월 초순 ○ 나무주사 : 6~7월
짚시나방	포플러류 버드나무 벚나무	잎	○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○ 디프제 살포	○ 4월 중·하순
옹애류	벚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	잎 가지	○ 살비제(디코풀, 아이트유제) 살 포(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)	○ 발생초기(수시)
진딧물류	벚나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	잎 가지	○ 살충제 살포(동일 약종의 연용 은 피함)	○ 발생초기(수시)
깍지벌레류	벚나무 소나무 포플러류 등	잎 가지	○ 수프라사이드 유제,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(동일 약종 의 연용은 피함)	○ 발생초기(수시)

※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~3회, 약량은 권장 농도임

[별표 9]

비용부담의 산정기준

^ 피해 발생의 경우 √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별목,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⇒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○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⇒ 수목 및 기타 훼손 정도에 따라 부과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×훼손정도(%)
^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이유 √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식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: 시장의 승인 및 감독 ※ 시장의 지시에 위반 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. 시에서 이식하는 경우 ⇒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○ 제거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: 시장의 승인 및 감독 ⇒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. 시에서 제거하는 경우 ⇒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+제거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급공사설계비 :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(재료비 + 노무비 + 제경비)하여 산정 ○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: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○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: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,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	

[별표 10]

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

훼손자 부담금	보상금지급액	비 고
10만원 미만	문화상품권 10,000원	
10만원 이상~50만원 미만	문화상품권 20,000원	
50만원 이상~100만원 미만	문화상품권 30,000원	
100만원 이상	문화상품권 40,000원	

[별표 11] 삭제 <2018. 7. 31>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21. 6. 10>

가로수사업(식재·이식·제거·가지치기 등)승인 신고서

(제11조제2항 관련)

[별지 제2호 서식]

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

신고자 인적사항

- 성명 :
- 주소 :
- 전화번호 :

가로수 훼손자 신고내용

- 성명 :
- 주소 :
- 전화번호 :
- 차량번호 : (차종 : 색상 :)
- 훼손일시 :
- 훼손장소 : (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)
- 훼손내용 :
 - 시설물명 : 가로수
 - 수종 :
 - 수량 :
 - 기타 : 훼손내용

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 (사진 등)

년 월 일

신고자 : (인)

광명시장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

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